



국토교통부

국 토 교 통 부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개정알림

1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드립니다.

2. 철도안전법 개정(법률 제19984호, '24.4.10 시행)에 따라 선로작업시 열차의 운행 일정 및 작업일정과 관련한 협의를 거친 경우 운행안전관리자, 관제업무종사자, 관할역 관리책임자 등의 협의서 보관 의무 부여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철도안전법 시행규칙(국토교통부령 제1323호), '24.4.10 시행」이 일부 개정되었음을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철도안전법 시행규칙(국토교통부령 제1323호) 1부. 끝.

국토교통부장관

수신자 국가철도공단이사장, 한국철도공사사장, 주식회사에스알대표이사, 공항철도주식회사, 신분당선(주), 서울교통공사사장, 부산교통공사사장, 인천교통공사사장, 대전교통공사사장, 대구교통공사사장, 광주교통공사사장, 서울시메트로9호선(대표계정), 경기철도주식회사, 부산-김해경전철주식회사, 용인경량전철(주) 대표이사, 의정부경량전철(주), 우이신설경전철 주식회사, 김포골드라인운영주식회사, 새서울철도주식회사, 남서울경전철(주), 남양주시공사사장, 한국교통안전공단이사장, 가야철도(주), 전라선철도(주), 이레일(주) 대표이사, 서부광역철도(주), 지티엑스에이운영(주), (사)한국철도운전기술협회, (사)한국전기철도기술협회장, (사)한국철도시설협회, 사단법인 한국철도신호기술협회, (사)한국철도차량엔지니어링 이사장, 서울특별시장, 부산광역시장, 대구광역시장, 인천광역시장, 광주광역시장, 대전광역시장, 울산광역시장, 경기도지사, 충청북도지사, 충청남도지사, 강원특별자치도지사, 전북특별자치도지사, 전라남도지사, 경상북도지사, 경상남도지사,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세종특별자치시장, 우송대학교총장, 국립한국교통대학교총장, 동양대학교총장, 송원대학교총장, 서울과학기술대학교총장, 경일대학교총장, 경북전문대학교총장, 한라대학교총장

행정사무관

박영석

철도안전정책 전결 2024. 4. 9.

과장

조성균

협조자

시행 철도안전정책과-2266

(2024. 4. 9.)

접수

우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어진동) 국토교통부 철도국

/ <http://www.molit.go.kr>

전화번호 044-201-4825

팩스번호 044-201-5671

/ 0sukorea@molit.go.kr

/ 대한민국 공개